서 면 답 변 서

소 속	평창군의회	질문위원	김영해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일자	2007.12.10(월)
회 의	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3차 예결특위		

질문요지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총예산액 1,360백만원에 대한 투자 및 사업비의 적정성, 법인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유?

답변내용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의의?》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란 시설수요와는 달리 주로 수혜자의 집을 방문하여 요양·목욕·간호를 하거나 주간 또는 2~3개월 단기보호를 담당하는 시설로서 우리군은 현재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노인복지센터(소장 허순옥)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80명의 방문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충족율에 대하여?》

○ 2008.7.1일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한 우리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충족율은 수요 133명 대비(시설수요 61명을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노인인구 2.5%)운영규모는 80명으로서 60%의 충족율을 나타내고 있어 시설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가칭 "평창 웰페어" 사업자 선정동기에 대하여?》

○ 최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립제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영리목적의 개인 또는 단체로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사업자를 물색하던중 "횡성군 둔내 어린이 집 운영자인 곽승희씨" 의 신청제의가 있어 횡성군청등 다방면으로 확인한 결과 운영경험등 모든면에 있어 건실사업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된 이유에 대하여?》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한 전국적인 시설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조속한 시설확보를 위해 법인설립과 보조금 신청을 동시에 신청해도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동시에 신청하게 되었으며 법인승인권자인 강원도로부터 시설확보의 시급성과 건실한 보조사업자로 인정받아 법인 설립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법인설립을 진행중에 있고 현재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만한 법인은 우리군에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 용평면 장평리 406번지(장평초등학교 인근)에 건립계획인 "평창웰페어"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총95명규모(방문보호80명,주간보호10명,단기보호5명)로서 현재 남부권은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중에 있고 북부권의 경우 같은 산하기관인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중에 있으나 거리등 한계가 있어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고 수혜인원에 한계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본 시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한 우리군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북부권 재가시설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비 총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 예산설명서상 총사업비 1,360백만원은 전산상 오류사항으로서 총사업비 340백만원은 국비50%, 도비25%,군비 25% 법적부담 비율로서 향후 추가지원은 없을 계획이며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운영중인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타가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방문보호만 수행하고있는 상태로서 주간·단기보호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보완을 2010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비에 대하여?》

○ 재가시설 운영은 2008.7.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보험료 65%+국가및자치20%+본인15%)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국가 및 지방비 부담규모는 현재까지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